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02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김태선·정준호·장철민

김남근 · 복기왕 · 박 정

한민수 · 김태년 · 윤종군

이용우 • 박홍배 • 이학영

김주영 • 윤준병 • 강득구

박해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난임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 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 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인공수정"을 "난임검사, 인공수정"으로, "연간 6일"을 "연간 6일(난임검사의 경우에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주는 근로자가 <u>인공수정</u> 또는	<u></u> 난임검사, 인공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u>수정</u>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에 <u>연간 6일</u> 이내의 휴가를 주	<u>연간 6일(난임</u>
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u>검사의 경우에는 1일)</u>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